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가.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직접보험(공동보험 포함)

가) 생명보험

나) 손해보험

2) 재보험 및 재재보험

3)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4)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나.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 1)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 2)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 3) 금융리스
- 4)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 5) 보증 및 약정
- 6)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 가)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포함)
 - 나) 외환
 - 다)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 라)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마) 양도성 증권, 그리고
 - 바)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 7)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8) 자금중개업
- 9)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 10)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11)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12)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1목부터 11목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신금융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지 않지만,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공급되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를 말하며, 기존 및 새로운 상품과 관련되거나 상품이 제공되는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는
- 나.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

건전성 조치 예외¹

3. 이 협정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건전성 사유를 포함한 감독 사유 및 감시 사유²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모든 소비자/이용자/고객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그리고

나. 그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의 보장

4. 이러한 조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보다 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규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5.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6.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를 포함한 감독 및 감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의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투명성

7.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제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방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방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

¹ 당사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그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감독되지 않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목적상 건전성 조치로 간주될 것이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조치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맞게 취해진다.

² “건전성 사유를 포함한 감독 사유 및 감시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자율규제기구

8.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하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 유가증권이나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청산 기관 또는 그 밖의 기구나 협회에 대한 회원자격, 참가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때, 또는 그 당사국이 그러한 기관에 금융서비스 공급에서 특혜 또는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때, 그 당사국은 그러한 자율규제기구가 제8.3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지급 및 청산 제도

9.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이 항은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신금융서비스³

10. 각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새로운 법의 제정 또는 기존의 법의 수정이 요구되지 않는 한, 동종의 상황에서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사국은 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인가는 오직 전전성 사유로만 거부될 수 있다.

일정 정보의 출급

³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않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인가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가. 금융기관 또는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나.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 정보

정보의 이전

12.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정보의 이전 및 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국만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⁴

13. 당사국은 다음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가. 자국의 영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자적 또는 그 밖의 수단에 의한 자료 이전을 포함한 정보 이전, 또는

나. 자국의 영역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처리

14. 제13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규제당국이 규제 또는 건전성 사유로 자국 영역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영역 내에 기록 사본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 관리 및 저장, 그리고 시스템 유지와 관련된 자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요구는 이 협정상 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른 규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를 저해하지 않는다.

15. 제13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개인 데이터, 개인 사생활 그리고 개인의 기록 및 계정의 비밀성을 보호할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권리는 이 협정상 그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구체적 예외

16.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그 당사국이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17.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8.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그 당사국이,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그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그 당사국의 보증하에, 또는 그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인정

19. 당사국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당사국의 전전성 조치를 협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들 간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당사국과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그러한 인정을 부여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